

의안번호	제528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3월 4일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상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8
----------	-----

발의연월일 : 2024년 3월 4일

발 의 자 : 유상용·김현문·이정범
박병천·박용규·박재주
김성대 의원

1. 제안 이유

「지방보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로 지방보조금 관리·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나. (위원회 구성)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목적 추가(안 제9조제1항)

2) 당연직 위원 임명 대상 공무원 직위 확대(안 제9조제4항)

※ (현행조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

※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공무원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만 의미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초과 불가

다. (위원회의 운영) 상위법에 따른 용어 명확화(안 제12조)

※ 분담 기준 등에 따라 ⇒ 분담의 적정성 여부 등을

라. (위원회 회의)

- 1) 위원회 대리 출석 조항 삭제(안 제13조제3항)
- 2) 서면 심의가 가능한 경우를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안 제13조제4항)

< 조례 간 서면 심의 가능 사유 비교 >

구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면 심의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해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마. (회의록) 회의록 기재사항(일시, 장소, 참석 위원 성명 등) 구체적 명시(안 제17조제1호~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예산과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25조와 영 제14조”를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2.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교육감은 법 제26조에 따라 교육청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9조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을 “위원회 구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 된다”를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청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5.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6.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중 “분담 기준 등에 따라”를 “분담의 적정성 여부 등을”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회의록”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u>교육감은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 <u>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u>----- ----- ----- ----- ----- -----.</p> <p><u>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u> <u>2.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u> <u>3.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u> <u>4.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u> <u>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u>

②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2. (생략)

③ ~ ⑤ (생략)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생략)

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③ ----- 법 제36조의3-----

1.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감은 법 제26조에 따라 교육청의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 라.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 마.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

④ -----
----- 사람 중에서
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부한 사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
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
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
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
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② (생
략)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
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
문지식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5.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6.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
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

7.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

----- 분담의 적
정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교육감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7조(회의록)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

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할 것.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보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